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358

발의연월일: 2025. 3. 26.

발 의 자:이연희·허종식·서미화

이해식 • 한준호 • 김정호

문진석 • 박홍배 • 박상혁

김윤덕 • 정준호 • 이광희

이춘석 · 이정문 · 박수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은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경제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공항운영 분야 역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보안 검색, 승객 서비스, 수하물 처리, 예측 유지보수, 승객의 흐름, 비대면 탑승 수속 등의 인공지능 적용이 가능해지고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기여하고 관련사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공항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제10조제1항제9호).

법률 제 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제10조(사업) 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 <신 설></u>	9.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생략)	<u>10</u> .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